융합연구사업 관리규정

제정 2014. 9.24.
개정 2015. 4.24.
개정 2017. 9.13.
개정 2018. 3.28.
개정 2019. 6.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 정관 제5조제4호의 소관연구기관(이하 “소관기관”이라 한다) 간의 협동연구지원을 위해 수행하는 융합연구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융합연구사업”이란 연구회에서 지원하는 융·복합 연구개발사업으로 2개 이상의 소관기관간 또는 2개 이상의 소관기관 및 국내외 산업계·학계·연구계(이하 “산·학·연”이라 한다)가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2. “융합연구과제”란 융합연구사업 수행을 위해 연구회가 선정하여 수행하는 단위과제를 말한다.
3. “주관연구기관”이란 융합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26.>
4. “협동연구기관”이란 융합연구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융합연구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융합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융합연구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실시”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7. “기술료”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8.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융합연구과제에 필요한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을 말한다.
9. “참여기관”이란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융합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을 말한다. <신설 2015.4.24>
10.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5.4.24>
11.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 융합연구과제 전체를 주관하고, 연구수행에 따른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4.24>
12. “세부연구책임자”란 세부과제로 편성된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4.24>
13. “연구개발과제”란 융합연구사업, 주요사업 등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과제를 말한다. <신설 2019.6.26.>
14. “참여연구원”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6.26.>
15. “학생연구원”이란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참여연구원을 말한다. <신설 2019.6.26.>
16.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

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신설 2019.6.26.>

17. “데이터관리계획”이란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신설 2019.6.26.>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조에 따른 융합연구사업
2. 기타 융합연구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연구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②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융합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관리는 연구회 사업관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8.3.28>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융합연구위원회) ①이사장은 융합연구사업의 효율적인 기획·평가·관리 등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융합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융합연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시행한다.

1. 융합연구 중장기 방향 및 전략 수립
2. 융합연구사업 시행계획 수립
3. 융합연구주제 선정 및 과제 발굴·평가·관리방향 수립
4. 융합연구 관련 제도개선
5. 기타 융합연구사업과 관련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융합클러스터) ①이사장은 소관기관의 실질적 융합연구 촉진을 위해 기관 간 협력분야를 도출하여 해당분야 연구자들로 구성된 협의체인

융합클러스터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②융합클러스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이사장은 이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동향 정보 수집·분석
2. 융합연구 신규과제 기획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주관기관의 장은 융합클러스터 운영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④융합클러스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융합연구단) ①이사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동연구기관과 협의를 통해 연구기관 내에 공동연구공간을 마련하게 하고,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형태의 융합연구단(이하 “연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연구단의 장(이하 “연구단장”이라 한다)은 해당 융합연구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하며, 연구단을 대표하고 연구단 운영 및 연구수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③연구단이 설치된 연구기관은 연구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1. 연구사업 수행 지원 등을 위한 협약 체결
2.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공간 및 행정지원
3. 연구사업 수행에 적합하도록 행정적, 재정적 제도의 정비
4. 기타 연구회 및 협동연구기관과 협약으로 정한 사항의 성실한 이행 및 준수
④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연구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주관연구기관 등) ①융합연구과제를 신청하는 연구기관은 당해 융합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주관연구기관 대상 연구기관의 범위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6.26.>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에 소관기관 이외 국내외 산·학·연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융합연구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협동연구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융합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은 연구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④융합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은 당해 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융합연구과제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윤리의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3. 연구기관의 보안관리의무
4. 연구·실험의 안전성 확보 및 연구활동종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6.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우선적 지원
7. 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8. 연구개발 결과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
9. 기술료의 징수, 사용, 관리 및 그 결과의 보고
10. 협동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의 구성 및 변경 요청
11. 위탁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의 구성 및 변경
12.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비 정산,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액 등의 회수 및 결과 보고
13. 기타 융합연구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융합연구사업 연구계획서의 작성
2. 과제의 내용, 수행방법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

3. 참여연구원의 구성
4. 연구비 중 직접비의 관리 및 사용
5. 세부 과제의 조정・감독
6. 융합연구과제의 연차, 단계, 최종보고서 작성 및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개정 2019.6.26.>
7.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
8. 기타 융합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⑥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의 장, 세부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제3장 사업기획

제8조(사업・시행계획의 수립) ①이사장은 융합연구사업 예산이 확정된 이후 해당 사업년도의 융합연구사업 사업계획을 연구회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시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융합연구사업 시행계획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주제 발굴 및 기획) ①이사장은 당해연도 중에 추진할 융합연구주제 발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단독 또는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융합클러스터 운영을 통한 주제 발굴
2. 융합연구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제 발굴
3.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주제 발굴
4. 외부 수요조사를 통한 주제 발굴

②제1항에 따라 발굴된 융합연구주제는 제8조제2항의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③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융합연구주제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요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융합연구주제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권

리화, 사업화 전략 수립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공고, 선정 및 협약

제10조(공고) ①이사장은 발굴된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추진계획을 연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거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합연구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융합연구사업의 신청자격 및 선정절차
3.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신청) ① 융합연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융합연구과제계획서(이하 “과제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융합연구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5.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5의2. 주요 연구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및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신설 2019.6.26.>

6. 참여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비 명세서
7. 연구단 설치, 관리·운영 등의 방안(연구단으로 수행하는 과제에 한함)
8.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9.6.26.>

제12조(선정) ①이사장은 제11조에 따라 과제계획서가 신청·접수되면 위

원회 위원 및 관련분야 산·학·연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융합연구과제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선정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4>

②선정평가위원회 구성 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4.24>

③융합연구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융합연구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2.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및 타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3. 연구개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정성
4. 수행기관간 협력 및 과제추진체계의 적정성
5. 연구인력의 우수성 및 연구윤리 수준
6. 연구환경(연구시설, 장비 등)의 적정성 및 연구기관의 관리·지원 능력
7. 연구비 구성의 적정성
8. 연구개발결과의 기대성과
9. 기술이전, 사업화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가능성
10. 융합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11. 기타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

④이사장은 융합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우수한 연구개발결과를 낸 연구자가 신청한 과제계획서에 가점을 주는 등 우대할 수 있다.

⑤이사장은 융합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제32조제2항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였거나 평가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융합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과제계획서를 신청할 때에는 감점을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다만, 평가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과제 중 성실실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대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⑥이사장은 융합연구과제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선정평가의 항목, 배점기준 등을 달리할 수 있다.

⑦이사장은 과제 심의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자에게 과제계획서를 보완토록 권고한 후 이를 재심의 할 수 있다. 또한, 신청된

과제들이 각기 장점이 있어 통합수행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 간의 협의를 거쳐 통합수행계획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⑧제3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 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유사한 주제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4.24.>, <개정 2019.6.26.>

⑨이사장은 선정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융합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비 지원규모를 결정한 후 이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과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2조제9항에 따른 융합연구과제 선정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과제계획서를 연구회에서 제시한 심의의견 등을 반영, 보완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 <2019.6.26.>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중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완하여 제출하는 과제계획서에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19.6.26.>

제14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①융합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융합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이 연구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연구단장은 전임근무를 하고, 소관기관에 소속된 세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70% 이상 연구단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주관연구책임자, 세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연구계획서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개정 2019.6.26.>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개정 2017.9.13.>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개정 2017.9.13.>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융합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주관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주관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1. 주관연구책임자가 외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3개월 이상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과제의 연구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차년도에는 참여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의 체결) ①이사장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융합연구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융합연구과제계획서

2. 연구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의2.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공동활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9.6.26.>
5. 기술료의 징수, 사용에 관한 사항
6.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7.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9.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9의2.「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신설 2019.6.26.>
10. 과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0의2.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6.26.>
11.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융합연구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융합연구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 간의 협약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후 45일 이내(해외 소재 기관인 경우 60일 이내)에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4>, <개정 2019.6.26.>

④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 간의 협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 사이에 체결하며, 참여기업에서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은행발행약속어음 등 주관연구기관에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현물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출자확약서 등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협약은 다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되, 융합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연차별 협약 등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4.24.>, <개정 2019.6.26.>

⑥참여연구원 중에 학생연구원이 있는 경우 제1항제5호에 따른 기술료

의 사용에 관한 사항에는 학생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제2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지급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6.26.>

제16조(협약의 변경)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협약변경은 과제가 종료하기 30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이사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참여기업, 연구목표,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설 2019.6.26.>

②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해약)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연구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융합연구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2.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융합연구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3.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융합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4.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의2.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신설 2019.6.26.>

5. 기타 이사장이 융합연구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②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비 중 연구회에서 출연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연구회에서 출연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연구비 지급 및 관리, 정산

제18조(연구비의 산정) ①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융합연구과제의 연구비는 사용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하여 계상한다.

②이사장은 합리적인 연구비 산정을 위하여 선정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연구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계상하고, 이사장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에게 일정부분을 현금(이하 “기관부담금”이라 한다)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참여기업은 현금 및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기관부담금은 연구개발적립금, 주요사업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연구비의 지급) ①이사장은 융합연구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비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사장은 연구비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일괄하여 지급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연구비를 재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국외에 있을 경우 지급방법, 절차 등을 달리 정하

여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③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비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제3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제계획서 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26.>
③해당연도 연구비는 사업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수행기간 내에 사용하고, 정산은 해당연도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연구비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연구회에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9.6.26.>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신설 2019.6.26.>
2. 연구개발에 재투자 <신설 2019.6.26.>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신설 2019.6.26.>
4. 그 밖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신설 2019.6.26.>
⑤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융합연구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자료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제21조(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관부담금을 포함한 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해 연구회 규정에 따라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연구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②이사장은 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용실적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융합연구과제 지원중단 혹은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 잔액 및 부당 집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연구회에서 출연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6.26.>

④연구비 정산은 총 연구비를 대상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이사장은 융합연구과제의 성격 및 연구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산 절차를 달리하거나 간소화 할 수 있다. <신설 2019.6.26.>

제6장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평가

제22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성과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기획단계에 해당하는 융합클러스터 사업과 선행융합연구사업은 성과요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8>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문서를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서류와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③이사장은 융합연구과제의 성격 및 연구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결과의 보고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출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도 융합연구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연차실적·계획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다년도 협약 과제의 경우에는 다년도

협약 종료년도에 단계보고서 및 다음단계 과제계획서 등을 다년도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제23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이사장은 융합연구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성과 목표 관리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결과와 연구성과 활용 계획·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조사(제26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를 통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연구성과 활용 점검이 필요한 과제에 한해 추적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융합연구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에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개정 2015.4.24.>, <개정 2018.3.28.>, <개정 2019.6.26.>

②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절대평가 및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대상 융합연구과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장실사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28.>

③이사장은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평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선정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8.3.28.>, <개정 2019.6.26.>

④이사장은 융합연구과제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결과평가의 단계, 항목, 배점기준 등을 달리할 수 있다.

⑤이사장은 주관연구책임자가 총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과제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판단하여 조기종료를 요청할 경우,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기종료 할 수 있다.

제24조(점검·평가에 따른 조치) ①이사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의 결과 과제진도 미비 또는 면밀한 검토의 필요 등으로 인하여 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차평가를 추가로 실시한다. 또한,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

는 융합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다. <개정 2018.3.28.>, <개정 2019.6.26.>

①의2. 계속수행과제의 경우에는 중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연차 또는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6.26.>

②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융합연구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연차점검 또는 단계평가의 대상인 융합연구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과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8.3.28>
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연차 또는 단계의 연구개발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이사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융합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우수결과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으로 평가된 과제
2. 과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④이사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융합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융합연구과제를 실패한 융합연구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⑤이사장은 제 23조 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5.4.24.>, <개정 2018.3.28.>, <개정 2019.6.26.>

제7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제25조(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①융합연구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

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기관을 정한다.

②융합연구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을 소유기관으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결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소유로 한다.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제26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①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결과물을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융합연구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

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이사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이사장은 융합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융합연구과제의 최종평가 결과가 통보된 해의 다음 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24>

④이사장은 융합연구과제의 최종평가 결과가 통보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추적조사 하는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4>

제26조의2(기술예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향후 연구개발 예상성과(도출시기, 예상결과물 및 기술특성 등 포함)에 대해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4.24]

제27조(기술료 징수 및 사용) ①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기술료 징수기간 등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의 5%를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거나 적립하여야 하고, 나머지 기술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자 및 발명자 보상금 : 50% 이상
2.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 10% 이상
3.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 10% 이상
4. 제1호, 제2호, 제3호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료 :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 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③제2항1호에 따라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보상금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8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④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융합연구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제28조(융합연구사업의 보안) ①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융합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등을 바탕으로 한 자체 규정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②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융합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주요 정보 및 연구결과 등의 무단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융합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정보자료, 연구시설, 참여연구원 등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내용 및 성과물의 대외발표 시 보안조치

제29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이사장은 융합연구과제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성과, 실패한 융합연구과제 정보 등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의 정보 등 개인정보는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연계 또는 제공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융합연구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의 유휴·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③이사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융합연구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등록·관리 실태를 점검 및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융합연구사업을 통하여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도입, 추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장비 구입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1. 3천만원 이상이고 1억원 미만인 연구장비 : 주관연구기관 자체 검토 후 연구회에서 심의하고 승인 <개정 2015.4.24>
2. 1억원 이상인 연구장비 : 주관연구기관 자체 검토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승인 요청<개정 2015.4.24.>, <개정 2017.9.13.>, <개정 2019.6.26.>

⑤연구회는 제4항에 따른 장비도입심의를 평가와 연계하여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4.24>

제9장 융합연구사업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제30조(참여제한 기간 및 연구비 환수 기준) ①이사장은 융합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원, 지원인력,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의 범위에서 융합연구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2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5.4.24>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연구회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 3년 <단서 삭제 2015.4.24>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2년
5. 연구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이사장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비의 20% 이하인 경우 :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비의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 :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비의 30% 초과인 경우 : 5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주관연구책임자나 참여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3년 이내
8. 그 밖의 융합연구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규정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 1년

②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융합연구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④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조치 대상 융합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⑤이사장은 제4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3.>

⑦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비를 환수하는 경우 제6항에 따라 참여제

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연구회에 이체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이사장은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 연구 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되었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3.28.>, <개정 2019.6.26.>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본조 신설 2015.4.24]

제10장 보칙

제31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이 규정에 의하여 융합연구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2조(연구윤리의 준수) ①이 규정에 의하여 융합연구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융합연구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

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③융합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 결과를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6.26.>

④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를 검토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해약,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기관 자체징계 요구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심의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6.26.>

제33조 <삭제> <2015.4.24>

제34조(비밀유지 의무) ①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연구회 소속직원, 연구기관, 참여연구원 등이 융합연구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이사장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개정 2019.6.26.>

1. 평가대상 과제와 관련된 정보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기타 평가와 관련하여 비밀을 요하는 사항 <신설 2019.6.26.>

②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이사장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개정 2019.6.26.>

제35조(연구·실험 안전성 확보) 이 규정에 의하여 융합연구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등을 바탕으로 한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실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연구활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

다. <개정 2019.6.26.>

제36조(세부규칙의 제정·운영) 이사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융합연구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7조(융합연구사업 사업관리비) 연구회는 기획 및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당해연도 융합연구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업관리비로 편성할 수 있으며, 융합연구사업 사업관리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28>

제38조(연구데이터의 관리 계획)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연구과제의 경우,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효율적인 데이터관리계획을 위해「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19.6.26.>

부 칙 <2014.9.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 규정 시행 이전에 협약한 과제에 대해서는 협약 종료 시까지 협약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15.4.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협약이 체결된 과제에 대해서는 협약 종료 시까지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7.9.1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날(2017.9.13.)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개정) ①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② 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③ 이사장추천위원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④ 원장후보자심사위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⑤ 원장추천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⑥ 상임감사추천위원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9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⑦ 융합연구사업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4조제3항제4호, 제14조제3항제5호, 제30조제6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⑧ 소관연구기관 감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⑨ 소관연구기관 주요사업 기술료 징수·사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정관 시행당시 기타 연구회 다른 규정 등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인용하는 경우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8.3.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6.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4의2·제5항·제6항, 제20조제4항,제5항, 제21조제1항·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9조, 제38조는 2019.9.1.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합연구사업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8항은 이 규정 이후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협약의 체결 및 과제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15조제1항 9의2, 10의2는 이 규정 이후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수행 전념 및 보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28조, 제35조는 이 규정 이후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구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제5항은 2019.9.1. 이후 협약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구데이터의 관리 계획 및 협약의 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4의2 및 제38조는 2019.9.1. 이후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신설 2015.4.24>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선정기준(제12조제2항 관련)

1.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3) 상호간 평가자

비고: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과제 A와 연구개발과제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a가 B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b가 A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나.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다.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기관 자체 참여제한을 받은 전문가

마.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2.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제1호가목1)·3)에 해당하는 자라도 융합연구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별표 2] <신설 2015.4.24>

연구비 환수 세부기준(제30조제1항 관련)

환수사유		환수기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연구회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금액 이내
연구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참여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그 밖에 융합연구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